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과 타 인증인 활용 방안

제25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정광화 (강원대학교)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CONTENTS

01

서론

02

관련 문헌 및 현행
규정 검토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05

타 전문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06

결론

01 서론

Phase 1. 연구의 배경

국내외 동향

- ESG 공시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GRI, SASB, TCFD, CDP 등)하며, 국제적으로 기준 통합 및 규제 도입이 주요 이슈
-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은 2024년 채택 후 집행정지되었으며, 2026년 폐지 제안으로 연방 차원의 기후공시 규제는 불확실성이 확대됨. 다만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 규제와 투자자·공급망 요구는 지속되고 있음
- EU(2021): 2022년 CSRD 채택 및 2023년 ESRS 제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제화하였으나, 2025년 이후 Omnibus 패키지 및 2026년 ESRS 개정을 통해 간소화 병행
- ISSB: 2023년 6월 IFRS S1·S2를 공표
- 한국: 2026년 7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일정 확정(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FY2027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FY2029 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2026년 2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제2호 의결·공표함

공시와 인증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과 기술 부족

- KPMG(2024)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내부 기술과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과제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 산정 등 특수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제한된 인력 풀(pool), 공급망 관련 가치사슬 정보 관리 등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 증대

01 서론

Phase 1. 연구의 배경

전문가 협업의 중요성

- 지속가능성 정보가 가지는 **복잡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협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
- 2025년 1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는
 - ①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하는 전문가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는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을 제정·공포하고,
 - ② 국제윤리기준 관련 항목(Using the Work of an External Expert)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 시 그 전문성, 객관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개정·공포
- 회계법인은 내·외부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비회계법인은 환경·생물학·화학 등 기술전문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Channuntapipat et al. 2020)

01 서론

Phase 1. 연구의 배경

인증 관련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인증인에게 요구되는 기준 부재
 - 국내 인증기관들은 지속가능성정보 인증 시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 과정에서 책임 소재, 품질 관리,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실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EU CSRD는 인증제공자에게 법정감사인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 윤리, 계속교육, 품질관리 요건을 요구하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부재
- 인증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 환경정보의 경우, 이미 환경정보공개제도(환경법)가 시행되고 있어서 중복 공시되거나 중복 인증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인증 효율화 필요성이 존재
- 관련 지침 등의 부재
 -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서 제시하는 전문가 활용 요구사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
 - ESG 각 영역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과 범위가 상이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부재

01 서론

Phase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주요 목적

-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지속가능성 분야의 '타 전문가(인증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지속가능성 분야 타 전문가들의 참여가 인증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구조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특히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산업 환경과 법·제도적 여건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
- 지속가능성 관련 각 전문기관 및 인증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연구의 세부 목적

- 국내에서 향후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 시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분야 파악
-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 활용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등 특수 분야에서의 전문가 활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적 시사점 도출
- 전문가 협업의 장애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효과적인 전문가 활용을 위한 전문가 확보 방안과 커뮤니케이션 방안 모색

02 관련 문헌 및 현행 규정 검토

Phase 1.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Simnett et al.(2009)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인증 업무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회계·감사 전문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Channuntapipat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 시장에서 **회계법인은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회계법인은 환경, 생물학, 화학 등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독립적으로 인증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
- 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회(CAANZ)(2022)는 인증실무자가 지속가능성 정보 관련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며, **외부 전문가(환경 엔지니어, 인적자원 전문가, 조달/공급망 컨설턴트 등)와 협력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인증할 수 있다고 언급**

02 관련 문헌 및 현행 규정 검토

Phase 1.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프랑스 공인회계사 감독위원회(Haut Conseil du Commissariat aux Comptes, H3C)(2023)는 가치사슬상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현장검증 수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인증인이 기업의 감사인이 아닌 전문가를 이용하거나 기업과 그 자회사 또는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제3자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고
- 안혜진(2025)은 한국의 IFRS S1, S2에 대한 향후 검증가능성에 대한 연구 수행. 특히 추정치에 대한 검증 이슈와 면책조항 제공 등의 방안 제시
- 전규안 등(2025)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속가능성 인증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 기준, 인증 수준, 인증 범위, 인증보고서 양식 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02 관련 문헌 및 현행 규정 검토

Phase 2.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상 관련 규정 검토

ISSA 5000 vs ISAE 3000 비교표

항목	ISSA 5000	ISAE 3000
전체 명칭	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발행기관	IAASB	IAASB
적용 범위	지속가능성 정보 전반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정보 전반 (지속가능성 포함)
목적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인증 업무의 일반적 요구사항 규정	비재무정보에 대한 인증 업무의 일반 원칙 및 절차 제공
공개/최신 상태	2024년 11월에 최종안 발표 2026.12.15일 이후 시행, 조기 적용 허용	2013년 12월에 최종안 발표 2015.12.15일 이후 시행
확신 수준	합리적 확신, 제한적 확신 모두 포함	합리적 확신, 제한적 확신 모두 포함
중점 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특화된 절차와 리스크 대응 강조	모든 인증 업무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중심
보고서 구조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구성 및 연결 기준 고려	일반적 인증보고서 형식 제시
준거 기준	GRI, ISSB, CSRD, ISO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수용	보고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기준 수용 가능

- ISSA 5000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2023년 8월 공개초안을 공표하였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
- ISSA 5000이 기존의 기준을 적용가능성 및 적합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보완한 안이라는 평가가 있음

02 관련 문헌 및 현행 규정 검토

Phase 2.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상 관련 규정 검토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 주요 특징 요약

항목	내용
목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의 일반적 요구사항을 제공
적용 대상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 및 공시된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
확신 수준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과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모두 포함
관련 준거기준	GRI, ISSB, CSRD, ISO 등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과 연계

ISSA 5000의 인증인 측 외부 전문가 vs 타 인증인의 주요 사항 요약

구분	인증인이 해당 업무에 충분하고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음	인증인이 해당 업무에 충분하고 적절하게 관여할 수 없음
인증인 측 외부 전문가 (Practitioner's external experts)	외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 • 전문가의 자격성·역량·객관성(CCO) 등 평가 • 전문분야 이해, 업무의 성격 등 합의 • 업무가 인증인 목적에 적합한지 평가 등	해당사항 없음
타 인증인 (Other practitioner)	업무팀원 • 지시, 감독, 검토 요구사항 적용	타 인증인의 업무를 활용 • 타 인증인의 자격성·객관성 등 평가 • 독립성 준수 여부 질문 • 인증 목적 적합성 평가 • 필요 커뮤니케이션 수행 등

- 인증 업무 수행 시 인증인이 업무를 활용하는 당사자가 '인증인 측 외부 전문가(expert)'인지 또는 '타 인증인(practitioner)'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후속 절차나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
-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된 인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 내에서 인증인 측 외부 전문가와 타 인증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02 관련 문헌 및 현행 규정 검토

Phase 2.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상 관련 규정 검토

외부 전문가 vs 타 인증인 (IESSA 기준)

항목	외부 전문가 (External Expert)	타 인증인 (Another Practitioner)
정의	감사·인증 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로, 인증인의 지시, 감독, 검토 대상이 아님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 수행자이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인증기관 또는 인증인
업무 영역	기술, 환경, 공학, 사회과학 등 비재무 영역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인증 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 및 보고 (동일한 인증 기준 적용)
역할	인증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독자적으로 인증 수행, 결과는 주 인증인의 업무에 반영될 수 있음
윤리기준 적용	적격성·역량·객관성(CCO) 평가 필수 (Section 5390)	지시, 감독, 검토 불가능하므로 독립성 포함 윤리조항 준수 여부 확인 필요 (Section 5406)
감독 관계	업무 수행은 독립적이나, 업무 활용 여부는 인증인이 판단 및 책임	지시·감독·검토를 받지 않음. 업무 결과 활용 시 커뮤니케이션 필요
계약 및 평가	업무 성격, 범위, 목적에 대한 명확한 계약 및 CCO 평가 필요	업무 활용 전 독립성 기준 준수 여부 커뮤니케이션 필요
대표 기준 조항	IESSA Section 5390	IESSA Section 5406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의 전문가 활용 관련 윤리 요구사항

외부 전문가 활용 시,

-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 (이기적/유착/변호/압력 위험)을 식별, 평가, 그리고 대응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 인증인은 이러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타 인증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단락 5406)”과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단락 5390)”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 → **외부전문가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능과 전문성이 근본적으로 다름

02 관련 문헌 및 현행 규정 검토

Phase 3. 타 전문분야 전문가 활용 규정 검토: 회계감사기준

회계정보 vs 지속가능성정보에 대한 감사(인증) 주요 사항 비교표

구분	회계정보(재무제표)	지속가능성 정보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ISSB 기준, ESRS
인증기준	회계감사기준	ISAE 3000, ISSA 5000, AA1000AS 등
윤리기준	공인회계사윤리기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IESSA) 등
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ISQM 1)	품질관리기준(ISQM 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준
감독	심사, 감리제도	감독제도 도입
제도(인증/검증제도)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	인증인 자격요건 요구→ 인증제도 도입
인증인(개인)	공인회계사	직무중립·인증인 자격요건→ 지속가능성인증인 자격제도 도입

ISA 620 "Using the Work of an Auditor's Expert"

- 회계감사의 환경은 복잡성과 전문성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ESG, 기술 산업, 금융상품 등 회계 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회계감사 실무에서는 감사인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타 분야 전문가(auditor's expert)의 자문을 받아 감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허용
- 외부 전문가의 의견은 감사증거의 하나로 활용 가능하나, 해당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감사인의 책임 면제는 허용되지 않음
→ 더욱 체계적인 활용 및 평가 절차가 요구됨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1.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의 전문가 활용

내부 협업 및 전문성 활용의 보편화

- 효과적인 ESG 경영 및 보고를 위해 재무·감사·위험관리·법무 등 다양한 부서와 경영진, 이사회 등 광범위한 협력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짐
- AGCO Corporation(미국 농기계 제조사): 지속가능성팀의 모든 프로젝트는 타 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
- Workiva Inc.(글로벌 Software-as-a-Service 기업): 재무팀과 지속가능성팀 간의 협업 강화를 강조, 이는 데이터 관리 및 보고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1. 해외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의 전문가 활용

재무팀의 역할 증대와 인재 확보의 어려움

- 재무 전문가 설문조사(FERF, 2024): 미국 상장기업 재무 전문가 50명 이상 대상 조사 결과 재무팀의 역할이 지속가능성 보고 업무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응답 기업의 50%는 지속가능성 보고 역할을 전담하는 재무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
 - 특히 내부통제 기술을 보유한 회계사를 재무-ESG 전문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재무 부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은 ESG 보고용 내부통제(68%),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55%), 규제 환경 지식(50%)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탄소 회계나 기후 리스크 관리 같은 특수 분야는 다른 팀이나 외부 기술 솔루션에 의존하는 경향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1.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의 전문가 활용

ESG팀과 내부감사팀의 협업 강화

- 기업의 내부감사팀은 ESG 관련 위험 식별, 통제활동 평가, 데이터 정확성 검증 등을 통해 ESG 경영 및 보고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함
 - 이는 보고서 작성 자체보다,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및 사전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 KPMG: '내부감사 서비스'의 일환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ESG 주제에 대한 '주제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s, SMEs)'를 제공하여 조직의 ESG 관련 내부통제 및 보고 준비를 지원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1.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의 전문가 활용

규제 강화에 따른 내부감사기능의 중요성 증대

-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도입함에 따라 내부감사팀의 ESG 데이터 검증 책임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 내부감사의 ESG 정보 검증 방식은 인증과 자문의 두 가지 형태임
 - 인증(Assurance): 정기 감사 계획에 ESG를 통합하고, 온실가스 계산과 같은 정보 산출 방법론의 정확성을 확인
 - 자문(Advisory): 공시에서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절차와 내부통제의 격차(Gap)를 사전에 식별하는 데 기여
- ESG는 여러 기업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사일로 브레이커(silo-breaker)'로서, 내부감사 외에도 법무, 컴플라이언스, IR, 재무, 위험관리, 기술, 인사부서가 ESG 보고 규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 담당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2.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에서의 전문가 활용

해외 제3자 인증 서비스 시장 현황

- 시장 규모 및 성장(Verdantix, 2024):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증 서비스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8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향후 5년간 강력한 성장세가 예상됨
 - 주요 성장 동인은 EU의 CSRD 등 규제 강화, 이해관계자의 감시 증가 및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재무·비재무 정보의 통합보고 추세
 - 주요 인증 제공업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Deloitte, DNV, EY, KPMG, PwC 5개 기업이 가장 포괄적이고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더 그룹으로 평가됨

주요 인증 업무의 4대 핵심 영역

- ESG 및 지속가능성 사전 인증: 보고서 작성 전 준비 상태 및 시스템 점검
- ESG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데이터 인증: 발간된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 인증
- 탄소배출 인증: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전문 인증
- 지속가능금융 인증: 그린본드 등 ESG 금융상품 관련 인증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2.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에서의 전문가 활용

제3자 인증팀의 다학제적 구성 및 전문가간 협업

- ESG 정보는 범위가 넓고 특정 분야(온실가스 배출량, 산업 안전 보건, 공급망 관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성 요구
 - 이 때문에 전통적인 회계·감사 전문가만으로는 인증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어려움
- 제3자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회계·감사 전문가와 더불어 엔지니어, 환경, 생물다양성, 데이터, 인권, 특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 전문가(SMEs)를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다학제적 팀(multidisciplinary team)을 구성

다학제적 팀 구성 및 운영 사례

- **PwC:** 지속가능성 규제 전문가, 인증 방법론 전문가 및 다학제 전문가를 모아 CSRD 인증 태스크포스를 구성
→ 최신 규제 지침에 기반한 CSRD 인증 서비스를 제공
- **KPMG 헝가리:** 건축공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부동산 부문 ESG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EU 지원 프로그램 감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ESG 규정 준수 서비스 개발에 참여
→ 법률·공학·환경·금융·IT 같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시너지를 냄
- **DNV:** 특정 산업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
→ 예를 들어, 제철 시설의 탄소 배출량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용광로 운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직접 활용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2.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에서의 전문가 활용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전문가 협업의 진화

-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에서 전문가 간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는 기술 플랫폼 역할의 중요성 증대
- Workiva 플랫폼: ESG 데이터를 위한 중앙 공동 작업실처럼 기능하여 분산된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으고, 감사인(인증인)과 기업 내 ESG 전문가 간의 협업을 지원함
 - 핵심 기능은 감사 추적(audit trail)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수정했는지 모든 변경 이력을 추적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함
- Generation Impact Global & Arivu 파트너십: 스위스의 ESG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와 영국의 AI·블록체인 기술 기업 간의 파트너십 사례
 - ESG 보고 솔루션에 Arivu의 AI 및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AI로 데이터 분석의 깊이를 더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첨단 기술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성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함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 사례



Shell plc (에너지 및 석유화학)

- Shell의 인증기관은 Ernst & Young (EY).
2024년 보고서에 처음으로 EU CSRD 및 ESRS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된 지속가능성 보고 섹션을 포함. EY는 이에 대해 두 개의 분리된 인증 보고서를 제공하여 인증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화
 - ①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독립적인 인증 보고서: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순탄소강도(NCI) 관련 핵심성과지표(KPI) 등 특정 GHG 정보에 대해서만 '**제한적 확신**'을 제공
 - ②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독립적인 감사인의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 섹션 전반이 ESRS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제한적 확신**' 업무를 수행
- EY는 ① 온실가스 인증 보고서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specialist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Subject Matter)에게 문의하여 관련 보고 프로세스 및 통제 프레임워크를 이해했다"고 명시
- Shell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는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으로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를 다루면서
"석유 및 가스 매장량 감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기후변화 전문가" 등 여러 내부 전문가를 감사 과정에 참여시켜 Shell의 가격 가정 및 탄소 가격 방법론을 독립적으로 평가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힘.
이는 EY의 감사 및 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됨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 사례

TotalEnergies SE (종합 에너지)



- 인증기관은 PwC와 EY(공동 법정감사인).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반(ESRS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을 제공하는 반면,
Scope 1, 2 GHG 배출량, 메탄 배출량 등 특정 주요 기후 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을 제공하여,
핵심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제고
- 정보 준비 단계에서의 외부 전문가 활용 명시:
TotalEnergies는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했음을 명확히 공개
 - Wood Mackenzie (독립 컨설팅펌): Scope 1, 2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궤적(trjectories)에 대한 감사 수행
 - GoodCorporation (윤리 컨설팅): 자회사의 윤리 및 인권 관행 평가
 - EcoVadis (ESG 평가 플랫폼):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성과 평가
- 인증 단계에서의 전문가 협업:
인증 단계에서 인증인인 PwC와 EY는 TotalEnergies 내부의 '지속가능성·기후(Sustainability & Climate)' 부서 등
관련 담당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후 및 에너지 공시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
이는 기업 내부 전문가의 진술을 인증 증거로 활용한 사례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 사례

Somfy (스마트홈 솔루션)



- 인증기관은 KPMG SA.
TotalEnergies와 유사하게 보고서 전반은 '제한적 확신'으로,
회사가 요청한 특정 핵심 지표에 대해서는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인증을 제공
 - 합리적 확신 대상 지표: Scope 1, 2 및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 경영진 내 여성 비율 등
- 정보 준비 및 인증 전 과정에서의 다각적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
- (준비 단계) 내부 전문가:
HR, 지속가능구매, 윤리, 환경 등 다양한 부서의 사내 비즈니스 전문가(in-house business experts) 팀이
이중 중요성 분석과 영향·리스크·기회(IROs) 식별에 직접 참여
- (준비 단계) 외부 전문가:
Carbone 4 (탄소 배출량 평가 및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 검증), SBT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인증),
EDHEC (주요 제조 현장의 생물다양성 목록 조사 협력 수행)
- (인증 단계) 인증기관의 전문가 활용:
KPMG는 인증 보고서에서 "우리의 작업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야의
내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기술하여, 인증팀 내에 자체 전문가를 활용했음을 분명히 밝힘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 사례



Apple Inc. (테크 기업)

- 다중 인증기관(Multi-Assurer) 모델이 특징으로, Apple의 환경 진행 보고서는 단일 인증인이 보고서 전체를 인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전문기관이 각기 다른 전문 영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증 및 검토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함
- Apex Companies LLC (환경 컨설팅)
 - 인증 보고서 내 '독립성, 청렴성 및 역량 선언문' 섹션에서 "인증 팀은 환경, 사회, 윤리 및 보건 안전 정보, 시스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인증 및 검증 수행에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총 30년 이상의 경험과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보고서의 인증을 위한 Apex 표준 방법론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팀의 전문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
 - ESG 수석 컨설턴트(ESG Principal Consultant) 직책을 가진 선임 인증인과 기술 검토자의 실명을 보고서에 직접 기재하여 책임 소재와 전문성을 명확화

03 해외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해외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 사례

Apple Inc. (테크 기업)

- Fraunhofer Institute (독일 연구기관)
 - 스코프 3 제품 관련 탄소 발자국 방법론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검토자 자격증명 및 자격(Reviewer Credentials and Qualification) 섹션을 별도로 포함
- Karsten Schischke, Marina Proske, David Sánchez 등 검토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환경공학, 생애주기평가(LCA)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학력, 경력, 수행 프로젝트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극대화

검토자 자격 및 자질

Karsten Schischke:

- 환경 공학 연구(Dipl.-Ing. Technischer Umweltschutz, 베를린 공과대학교, 1999)의 일환으로 수명 주기 평가 과정 및 시험을 포함한 수명 주기 평가 분야의 경험과 배경
- 2005년 이후 8개의 서로 다른 산업 고객 및 EPEAT 환경 혜택 계산기에 대한 200건 이상의 LCA 및 PCF 연구에 대한 심사 검토(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 ICT 장비, 홈 자동화 기기, 서버, 데스크톱 컴퓨터, 인버터, 용접 장비, 열 펌프)
- 100개 이상의 ELCD 데이터세트 편집 조정 및 기여(www.lca2go.eu에서 제공: 제품 그룹: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태양광 발전)
- 2007년 이후 유럽 에코디자인 지침에 따른 여러 에코디자인 제품 그룹 연구에서 MEEuP / MEErP 방법론을 따른 환경 수명 주기 평가(외부 전원 공급 장치, 복잡한 섀시박스, 공작 기계, 용접 장비, 휴대전화, 태블릿)
- SIM 기술의 비교 수명 주기 평가
- 2000년 이후 연구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환경 게이트-투-게이트 평가(웨이퍼 보핑, 인쇄 회로 기판 제조)
- 다양한 ICT 제품에 대한 PCR 개발 조정
- 추가 업데이트 정보: www.linkedin.com/in/karsten-schischke

Marina Proske:

- 환경 공학 연구(Dipl.-Ing. Technischer Umweltschutz, 베를린 공과대학교, 2009)의 일환으로 수명 주기 평가 과정 및 시험을 포함한 수명 주기 평가 분야의 경험과 배경
- 2012년 이후 2개의 산업 고객 및 EPEAT 환경 혜택 계산기에 대한 물, 섬유 및 플라스틱 발자국을 포함한 LCA 연구의 심사 검토
- 모바일 스마트폰(Fairphone 2, 3 및 4) 및 노트북(Framework)의 수명 주기 평가
- ICT의 환경 평가 및 탄소 발자국에 관한 연구
- MEErP 방법론 내에서 재료 및 수명 측면에 관한 연구
- 추가 업데이트 정보: <https://de.linkedin.com/in/marina-proske-74347164/en>

출처: Apple Environmental Progress Report 2025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1.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 현황 및 추세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및 인증 현황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 수는 발행연도 기준 2016년 70개에서 2023년 299개로 약 4.3배 급증. 특히 2021년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간된 보고서 1,069개 중 988개(92.42%)가 제3자 인증을 받아, 인증이 보편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함
-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 시장은 해외와 달리 비회계법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참여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인증 기준의 경우, AA1000AS의 단독 채택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인증 기준이 점차 일원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2.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 사례

전문가 활용 공시의 제한적 현황

- 국내 주요 기업 20곳의 2024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대상으로 제3자 인증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 시 특정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와 협업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음
- 대부분의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인증팀에 의해 실시되었다" 또는 "오랜 경험과 이해가 탁월한 심사원"으로 팀을 구성했다는 등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러한 문구는 기업마다 차별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아니라 인증기관에 따라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정형화된 서술로 파악됨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2.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 인증 사례

구체적 사례 및 전문가 활용의 실질적 형태

- DNV (현대자동차, NAVER 보고서 인증):
다른 인증기관들과 달리 제3자 인증의견서에 팀 구성원으로 '기술 검토자'의 실명을 직접 기재하여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시사. 하지만 해당 기술 검토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내용을 검토했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국내에서 실질적이고 명확한 전문가 활용 사례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체 인증과는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전문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
 - 총자산 기준 상위 20개 기업(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제3자 인증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4개 기업이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그중 10개 기업은 Scope 3까지 검증
 - 복잡한 계산과 특정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전문 분야이므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ISSA 5000 도입 시 온실가스검증 결과 활용 방안

온실가스검증 제도 개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2012.5.14. 제정)
➔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효과적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목적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주무관청(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제출해야 함
- 검증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 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 온실가스 검증 업무는 상기 두 개의 법령을 근거로 의무 적용 중
 - 각각의 법률 제정 목적이 상이하므로 그 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배출권거래법 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vs. 탄소중립기본법 상 관리업체)
 - 외부 검증 전문기관 및 온실가스 검증심사원에 의해 검증 업무가 수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ISSA 5000 도입 시 온실가스검증 결과 활용 방안

ISSA 5000과 온실가스검증 제도 조화 모색

- 필요성
 - 지속가능성 정보가 가지는 복잡성과 광범위성은 기업의 정보 생성 및 인증 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타 전문가 활용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
- 현재 온실가스검증 제도가 의무 적용 중이므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 기업과 인증인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회계법인과 비회계법인 간의 원활한 협력 기회 창출
 - 온실가스 검증 업무는 독립적인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이를 활용하기 전에 관련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할 필요
 - 여기서는 앞으로 국제기준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ISSA 5000이 국내에 도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온실가스 검증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ISSA 5000 도입 시 온실가스검증 결과 활용 방안

ISSA 5000에 근거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위

- ISSA 5000에 따라 타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방식은,
 - ① 타 인증인(another practitioner),
 - ② 부문인증인(component practitioner),
 - ③ 경영진측 전문가(management's expert),
 - ④ 인증인측 전문가(practitioner's expert)의 네 가지가 가능
- 지속가능성인증인이 전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스코프 1,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온실가스 검증 제도의 검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 이때,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ISSA 5000의 상기 네 가지 분류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를 검토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ISSA 5000 도입 시 온실가스검증 결과 활용 방안

ISSA 5000에 근거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위

- 타 인증인(another practitioner)
 -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인증인이 수행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이를 말하며, 인증인은 타 인증인의 업무에 충분하고 적합하게 관여할 수 없음(문단 18)
 - ① 타 인증인의 업무는 별개의 업무(separate engagement)이며,
 - ② 타 인증인은 해당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증업무팀(engagement team)의 구성원(member)이 아니며,
 - ③ 인증인측 전문가에도 해당되지 않음
 - 현재 실무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인은 온실가스 검증 업무에 충분하고 적합하게 관여할 수 없음. 또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검증'이라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할 뿐,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인증인이자 인증인측 전문가도 아님.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타 인증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ISSA 5000 도입 시 온실가스검증 결과 활용 방안

ISSA 5000에 근거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위

- 타 인증인(another practitioner)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검증 업무와 ISSA 5000과의 일관성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ISSA 5000은 타 인증인 활용이 스코프 3와 같이 가치사슬 부문(value chain)에서 일반적이며 그룹 내 부문에서 타 인증인을 활용하는 상황을 제한적으로 예시. 모회사 또는 동일 기업 내 스코프 1, 2 검증 결과를 '타 인증인 업무'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정 검증제도 특성을 고려한 보완적 해석이 필요함
 - 둘째, '타 인증인 활용'의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 문서 검토 등 일정한 절차를 수행하고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ISSA 5000 문단 53과 54), 국내 실무상 지속가능성 인증인과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간에 ISSA 5000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서 검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함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ISSA 5000 도입 시 온실가스검증 결과 활용 방안

ISSA 5000에 근거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위

- 부문인증인(component practitioner)
 - ISSA 5000의 '부문인증인'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인증인은 부문인증인의 업무에 충분하고 적합하게 관여할 수 있어야 함(문단 18).
 - 하지만 온실가스 검증 업무는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검증 업무의 세부사항 또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증인이 온실가스 검증기관(검증심사원 포함)의 업무를 지시·감독·검토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인증인이 온실가스 검증 업무에 충분하고 적합하게 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부문인증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ISSA 5000 도입 시 온실가스검증 결과 활용 방안

ISSA 5000에 근거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위

- 경영진측 전문가(management's expert)
 - ISSA 5000에서 '경영진측 전문가'란 인증(assurance) 외의 분야에 전문지식(expertise)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으로, 그 전문 분야에서 그들이 수행한 업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작성을 보조한다고(assist) 정의하고(문단 18), 그 전문가의 산출물이 경영진이 작성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로 통합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나,
 - 현행 제도하에서 온실가스 검증 업무는 법에 의한 의무이며,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이미 작성, 완결된 배출량 명세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로서의 검증을 수행하므로, 정보 작성 지원자가 아니라 일종의 사후적 인증자로 기능
 - 따라서,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ISSA 5000상 '경영진측 전문가'로 분류하기에는 개념적·실무적 한계가 존재하나,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경영진측 전문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ISSA 5000 도입 시 온실가스검증 결과 활용 방안

ISSA 5000에 근거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위

- 경영진측 전문가(management's expert)
 - 실무에서 경영진측 전문가는 경영진의 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관계에 있으나, 현행 온실가스 검증제도에서는 검증 결과가 주된 수신자인 정부에 보고되며, 이는 공적 규제 이행을 위한 독립적 검증의 성격
 - 그러나, 정부 보고 목적의 법정 검증과는 별개로,
 -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업무범위가 사후 인증에 한정되지 않고,
 -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방법론 선택, 데이터 범위 설정, 계산 오류의 수정 등 정보 작성 단계에서 실질적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 그 결과가 경영진의 책임하에 지속가능성 정보에 반영되는 구조로 재설계된다면,
 - 해당 기관을 경영진측 전문가로 분류하는 방식 또한 논의 가능
 - 따라서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ISSA 5000상 '경영진측 전문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할 구분, 책임 소재, 보고 대상, 그리고 인증 독립성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3. ISSA 5000 도입 시 온실가스검증 결과 활용 방안

ISSA 5000에 근거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위

- 인증인측 전문가(practitioner's expert)
 - ISSA 5000의 문단 56은 '인증인측 전문가 활용' 시에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
 - 그중 문단 56(d)는 인증인이 그 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목적은 물론, 인증인과 전문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적절한 경우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
 - 하지만 법령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온실가스 검증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인증인이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업무를 전문가 업무로 설계하고 서면 합의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 따라서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인증인측 전문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4.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인증인 인터뷰 결과

인터뷰 개요

- 대상: Big4 회계법인 2곳, 상위권 인증기관 2곳 (총 4개 기관)
- 목적: 국내 인증 실무에서의 타 전문가 활용 실태, 품질관리, 애로사항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 심층 파악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4.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인증인 인터뷰 결과

1. 타 전문가 활용 실태

- 회계법인 A, B: (내재화 중심) 공급망 전문가,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박사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소수의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여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함
 - 인재 풀(pool) 부족과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응답
관련 내부 규정(업무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실제 활용 케이스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
- 인증기관 A, B: (외부 전문가 위촉 중심) 온실가스 심사원,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 계약' 형태로 유연하게 활용
 - 자체적으로 보유한 검증 매뉴얼에 따라 전문가의 자격요건, 적격성, 이해상충 이슈 등을 관리함
 - 시장이 아직 미성숙하고 비용 이슈가 크기 때문에, 직접 고용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외부 협업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힘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4.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인증인 인터뷰 결과

2. 품질관리 및 책임구분에 대한 인식 차이

- 회계법인 A, B: 타 전문가를 거의 활용하지 않다 보니, 이와 관련된 품질관리 및 책임구분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응답. 향후 활용 시 업무 범위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 인증기관 A, B: 내부 관리기준(매뉴얼) 안에 전문가의 자격요건, 독립성, 책임과 권한 등을 규정
 - '기술검토' 단계를 두어 타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에 대해 내부 심사팀장이나 다른 전문가가 재검토하는 품질관리 절차를 운영
 - 인증보고서에 심사팀장과 전문가의 서명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해당 인증기관이 진다는 점을 명확화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4.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인증인 인터뷰 결과

3. 실무상 애로사항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

- 인터뷰 대상 기관 모두 타 전문가 활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증 관련 비용과 낮은 보수**를 지적.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보수로는 높은 비용을 투입하여 타 전문가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인증기관이 겪는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 보고서 발간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다 보니 외부 전문가와의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
 - 타 전문가가 보고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예: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vs 지속가능성 보고서 배출량의 범위 차이), 심사팀장과 눈높이가 다른 경우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
 -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시 해당 전문가의 자질과 경험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4.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인증인 인터뷰 결과

4. 바람직한 협업 모델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 선호하는 협업 모델:
 - 회계법인: 기후, 공급망, 인권 등 핵심 영역은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여 내재화하고, 기타 비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풀을 통한 개별 계약 자문을 이상적 모델로 간주
 - 인증기관: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직접 채용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관 대 기관 간의 협업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응답
- 국제기준(ISSA 5000)의 실무 적용 가능성:
 - 회계법인: 그룹 인증 절차 등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인증기관: 전반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현재 활용 중인 AA1000AS나 ISAE 3000과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

04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

Phase 4.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인증인 인터뷰 결과

4. 바람직한 협업 모델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 전문가 자격 및 책임구조에 대한 제안:
 - 자격 제도: 특정 자격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업무 경력과 교육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 책임 구조: 향후 인증이 의무화될 경우, 이중서명제(각자 인증한 부분만 책임)나 공동 인증, 전문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
-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
 - 인터뷰 대상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타 전문가 활용 및 인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 가능하다면 인증 의무화까지 법제화되는 것이 이상적

05 타 전문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Phase 1.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정책적 제언 - 제도적 기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 문제점:
 - 타 전문가 활용에 대한 통일된 국내 기준(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이 부재하여 인증 업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 존재
 - 또한 인증 제공자 유형별(회계법인, 비회계법인)로 주로 사용하는 인증 기준에도 차이가 있음
- 대응방안:
 - ISSA 5000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적격성·역량·객관성(CCO) 평가, 업무 범위, 문서화 의무 등을 포함한 국내 인증 기준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고, 감독 당국은 인증기관의 CCO 평가 절차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관련 지침을 제시
 - 향후 국내 인증 기준 도입 시에도 ①단일 기준을 채택할지 ②복수 기준을 허용할지 ③단일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수정 도입할지 등 인증 기준을 어떻게 제정, 운영할지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

05 타 전문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Phase 1.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정책적 제언 - 제도적 기반

인증인-전문가간 협업 지원 플랫폼 구축

- 문제점:
 - 인증인이 적합한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부재하고,
 - 특정 분야 전문가의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음
- 대응방안:
 - 인증 업무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공공 주도의 '전문가 풀(Pool)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문가 탐색 및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예: 상장협·코스닥협의 사외이사 인력뱅크
 - 또한, 사전에 타 전문가의 CCO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도구와 절차 구축이 필요함. 예: 감독기관은 표준화된 CCO 평가 절차를 제공하거나 전문 분야별로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안내

05 타 전문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Phase 1.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정책적 제언 - 시장 인프라 조성 관련

타 전문가 관련 정보 공시 필요성

- 문제점: 인증인과 전문가 간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며, 기업이 이미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시하거나 인증 받은 정보를 인증인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부재함
- 대응방안: 공동 인증, 이중서명제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와 같이 인증보고서에 활용한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과 역할을 공시하는 방안은 인증 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인증 업무의 가치 제고 및 인증 보수 문제 개선

- 문제점: 낮은 인증 보수(평균 700~1,000만 원)는 타 전문가 활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 외부 평가기관들이 **형식적으로 인증 '여부' 만을 고려**하는 것이 주요 원인. 예: 한국ESG기준원, 기재부 경영평가
- 대응방안: 인증 보수와 투입 시간을 시장에 공시하여 정보 이용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인증 업무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외부 평가 시 인증 업무의 '품질'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의 인식을 개선해야 함

05 타 전문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Phase 1.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정책적 제언 - 시장 인프라 조성 관련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

- 문제점: 지속가능성 관련 계약은 보고서 설계, 작성부터 인증 업무까지 **일괄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러한 계약 관행이 저가 수주 및 인증 품질 저하를 유발
- 대응방안: 인증 업무의 독립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인증 업무는 별도로 분리되어 계약**되어야 함.
시장 자율보다는 규정 제정 등과 같이 제도적 정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인증 제공자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 협업 활성화

- 문제점:
 - 회계법인의 비재무정보 역량, 비회계법인의 인증 전문성에 대해 **시장의 의구심**이 존재
 - 또한 광범위하고 복잡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인증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대응방안:
 - 인증 제공자로서 회계법인과 비회계법인 모두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사례와 같이 **인증팀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권장
 - 또한, Workiva 등 기술 기반 협업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인증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정보 생성과 공시, 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06 결론

Phase 1. 결론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인증 분야에서의 타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 검토, 해외 및 국내 사례 연구, 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현행 규정을 살펴보고, 해외 및 국내 ESG 분야 전문가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인증인들(4개 기업)과 심도 깊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국내에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제정되었으나(2026.2.26), 인증기준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 공시 의무화 일정이 2026년 7월 최종 확정(공시 FY2027, 제3자 인증 FY2029부터 의무화)되었으나, 인증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실무 관행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본 연구는 상기 방법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활용 및 협업 방안을 제시하였음

06 결론

Phase 1. 결론

제언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타 전문가 활용' 관련 인증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문가의 자격·역량·객관성(CCO) 평가 절차 및 책임 소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언
- 또한, 인증기관과 전문가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가 활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인증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제언
- 마지막으로, 낮은 인증 보수 등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인증 업무의 가치를 제고하여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를 조성할 것을 제시

